

	ODA국제협력지원단규정	규정번호	3-7-38
		제정일자	2026.05.01.
		개정일자	-
		개정차수	-
		소관부서	ODA국제협력지원단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공적개발원조(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, 이하 “ODA”라 한다) 관련 교육, 연구, 국제협력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대학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한 ODA국제협력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ODA 및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의 발굴 및 수행
2. 개발도상국 대상 교육훈련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
3. ODA 및 국제협력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
4. 해외 대학 및 국제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
5. 국제개발협력 관련 컨설팅 및 학술활동
6. 기타 지원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3조(조직) ① 지원단에는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②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지원단에는 부단장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1. 지원단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2. 주요 ODA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 3. 예산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
 4. 국제협력사업 추진 및 협력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
 5. 기타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수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본다.